

영암군 고시 제2017 - 70호

##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 영 암 군 수

####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으로 ‘해양경비안전서’가 ‘해양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타 법 개정에 의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수정

나. 타 법 개정에 의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

#### 3. 별첨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나. 개정고시 전문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안전운항의 의무 등) ⑥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된다.</p>	<p>제3조(안전운항의 의무 등) ⑥ -----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 ----- -----</p>
<p>제6조(뉘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준수사항) ① 뉘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뉘시어선업자·선원은 뉘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 악화 등 상황발생 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조치 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시 <u>해양경비안전서(122)</u>, 소방서(119)등에 요청하여야 한다.</p> <p>3. · 4. · 5. · 6. · 7. · 8. · 9. (생 략)</p>	<p>제6조(뉘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해양경찰서</u> ----- -----.</p> <p>3. · 4. · 5. · 6. · 7. · 8. · 9.(현행과 같음)</p>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은 물론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영암군에 신고한 낚시어선으로 전라남도 연안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그 낚시어선의 승객”(이하 “승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운항 의무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출항 전 선체·기관·통신·구명장비 등 안전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 복용 상태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콜 0.03퍼센트 이상)에서는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상태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⑥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조(수질오염방지)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해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쓰레기 종량제에 사용하는 봉투를 비치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과도한 밀밥(일명 “떡밥”)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③ 낚시도구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④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의 보호) ① 낚시어선업자는 이용 승객으로 하여금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에 따라 포획금지 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포획될 경우에는 즉시 방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어촌계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업자·선원은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킬 경우 승객이 준수할 사항을 교육시킨 후 운항하여야 하며, 승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선원은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조치 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시 **해양경찰서(122)**, 소방서(119)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련기관에 보고하고,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낚시어선업자·선원은 다른 시·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낚시어선업자·선원은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배부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선내에 쓰레기봉투 또는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6.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8.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신고 입항하여야 한다.
  9.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②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출항 시 및 승선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 금지)에 따라 포획 금지 체장(체중) 이하의 수산 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3. 승객은 승선 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승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
    - 마.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5.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
  6.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7.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8.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방법)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 전 영암군 고시 제2013-15호(2013.07.03.), 영암군 고시 제2015-43호(2015.08.19)는 폐지한다.

## 【별표】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게시방법

## 1. 게시방법

가. 재 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나. 색 상

① 글 씨 : 검은색

② 바 탕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 승객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당해 낙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